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년 4월 22일(부천시장)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4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(97년 5월 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이충식)

가. 제안이유

-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 감축방안 중 의무감축방안 및 추가감축방안의 이행기간을 단축조정하여 대상 시설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
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사무는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구에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담금 경감 심의 및 경감을 조정에 문제점이 있어 이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

나. 주요골자

(전문위원 : 최인용)

- 교통량감축방안 기간 단축
 - 의무감축방안 : 1년간 → 9개월동안
 - 추가감축방안 : 9개월이상 → 6개월이상
 - 구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
 - 명칭 : 부천시○○구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
 - 구성 및 운영 : 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준용
- ※ 구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교통량감축방안 기간 단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며 대상시설물이나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규제를 완화하

는 사항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임

- 구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신설은 동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각 구청간 부담금 경감을 결정의 형평성 유지, 시와 구위원회의 업무한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의 보완이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없음

7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59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97. 4. 22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감축방안 중 의무감축방안 및 추가감축방안의 이행기간을 단축조정하여 대상시설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
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·징수사무는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구에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담금경감 심의 및 경감을 조정에 문제점이

있어 이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

□ 주요골자

- 교통량감축방안 기간 단축(안 제4조)
 - 의무감축방안 : 1년간 → 9개월동안
 - 추가감축방안 : 9개월이상 → 6개월이상(안 제10조, 제11조)
 - 구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(안 제10조, 제11조)
 - 명칭 : 부천시○○구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
 - 구성 및 운영 : 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준용
- ※ 구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별첨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8조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중 “1년간”을 “9개월동안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제6호중 “9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한다.

제10조중 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”를 “부천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”로 하고,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부천시○○구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(이하 “구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구위원회) ①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징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감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부담금의 징감률등) ①(생략) 1~3(생략) 4. 의무감축방안은 <u>1년간</u> 실시하여야 한다. ②(생략) 1~5.(생략) 6.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<u>9개월이상</u> 실시하여야 한다 ③(생략)</p>	<p>제4조(부담금의 징감률등) ①(현행과 같음) 1~3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9개월동안</u> ----- ②(현행과 같음) 1~5.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6개월</u> ----- ----- 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부담금징감조정위원회) ①시장은 징감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<u>부담금징감조정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 ②~⑥(생략) <u>(신설)</u></p>	<p>제10조(부담금징감조정위원회) ①----- ----- <u>부천시부담금징감조정위원회</u> ----- ②~⑥(현행과 같음) ⑦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<u>부천시○○구부담금징감조정위원회</u> (이하 "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</p>
<p><u>(신설)</u> 제11조~제12조(생략)</p>	<p>제11조(구위원회) ①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<u>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 ②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 제12조~제13조(현행 제11조 내지 제12조와 같음)</p>